

DIY 니트 신발 키트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NY N355798 (2025.12.17.)
- 쟁 점 사 항: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한국
- 최종 원산지: 터키



II 사실관계

용도	• 소비자가 구매 구성품을 조립하여 착용 가능한 신발을 만들 수 있는 키트용 제품		
재료		터키	• PVC 겔창
		한국	• EVA 안창 • 면사 • 인쇄 패턴지 • 소매용 박스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터키 PVC 겔창 생산  Manufacturing ▾  한국  STEP 1 터키산 겔창 수입 STEP 2 안창, 면사, 패턴지 생산 STEP 3 소매용 박스 포장 Export ▾  한국 최종 수출		
상세 공정		터키	• PVC 겔창 생산
		한국	• EVA 안창, 면사, 패턴지 생산 • 터키산 겔창과 한국산 구성품을 소매용 박스에 포장

III 판정 결과

《CBP의 판정》

- ☑ 세트로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 해당 세트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품목이 제301조 적용을 받는 경우, 전체 세트에 대해 제301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됨
- ☑ 해당 세트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품목은 겔창이며, 겔창은 터키에서 전적으로 생산되므로, 전체 세트의 원산지는 터키임

➔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터키

Ⅳ 시사점

- ⊙ DIY 신발 키트는 완성된 형태의 겔창에 최종 소비자가 면사를 직접 꿰어 신발 형태로 만드는 제품으로, CBP는 겔창이 최종제품에 본질을 제공한다고 판단함
- ⊙ 다만, 일반적인 완성품 신발에 대한 기존 CBP 판정의 경우, 신발의 윗 부분인 갑피가 완성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갑피가 완성 신발의 본질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이후 이루어진 공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산지를 검토함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운동화
사례번호	HQ 735338 (1994.01.28.)
쟁점사항	실질적 변형 판정
사실관계	• [체코] - 가죽을 재단, 봉제하여 완전히 개방되고 라스팅되지 않은 상태의 갑피 생산 • [이탈리아] - 중창과 겔창 생산 - 갑피를 라스트에 씌우고 라스팅 보드를 적용 - 최종 결합
판정 결과	• 라스팅 또는 창 부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갑피는 신발의 본질 그 자체를 가지지 않으며, 이후 라스팅되고 창이 부착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변형됨 • 완성되지 않은 형태의 갑피는 이탈리아에서 최종 갑피로 완성되며, 기타 부품과 결합하여 신발로 변형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이탈리아임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